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66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하승수

피 고 1. 검찰총장

소송수행자 이정우, 김은정, 김동욱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소송수행자 정거장, 윤상운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 피고 검찰총장이 201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검찰총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검찰총장이, 원고와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검찰총장이 2019. 10. 30.,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피고 중앙지검장'이라 한다)이 2019. 10. 21. 각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8.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1. 2017년 이후 지출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집행건별로,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
2. 위 기간 동안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나. 피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는 모두 공개하였고, 피고 검찰총장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정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의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을 일부 공개하였으며, 피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 7호에 따라 원고의 나머

지 공개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하고, 대상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피고(처분일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지출증빙서류	집행정보	지출증빙서류	집행정보	지출증빙서류
피고 검찰총장 (2019. 10. 30.)	부분공개 (제4호)	비공개 (제4호)	부분공개 (제4호)	비공개 (제4호)	공개	비공개 (제4호)
피고 중앙지검장 (2019. 10. 21.)	비공개 (제4호)	비공개 (제4호)	비공개 (제4호)	비공개 (제4호)	공개	비공개 (제6, 7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1)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제65조 제9호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일종으로서,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을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내용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검찰청은 예산을 독립하여 배정받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예산 집행에 따라 이를 재배정 받아 지정된 목적에 따라 지출할 뿐이므로, 특수활동비의 집행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피고들에게는 그 증빙방법을 작성하고 관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는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 중 이 부분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피고 중앙지검장의 경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을 재배정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지출하거나 그 지출내역을 작성·보관할 수 없고,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구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법무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서에 대한 점검 및 검증을 한 적이 있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수활동비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재배정하여 지급한 점, ② 법무부는 세출 예산 재배정 계획에 따라 정해진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대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재배정하고, 배정된 특수활동비에 관한 세부적인 집행은 대검찰청과 산하 검찰청 및 사업부서에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은 기관장·사업부서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회신한 점, ③ 관련 법령상 피고들이 특수활동비 관리의무가 있는 집행권자가 아니어서 이에 관한 집행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실질

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는 기관인 이상 그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1차적으로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피고 검찰총장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특수활동비 총 집행금액을 공개하였는데, 피고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어떠한 형태로든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특수활동비에 관한 집행정정보 및 지출증빙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피고 검찰총장은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비공개 결정 당시 구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처분사유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 중앙지검장은 반대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비공개 결정 당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처분사유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각 처분사유의 입법 취지, 내용 및 요건이 상이하여 서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판단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

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특수활동비 집행정정보 및 지출증빙서류에 관한 판단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장]로서, 국고금관리법 제22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제65조 제9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는 그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하여 그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이 사건 비공개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들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및 지출증빙서류에 관한 판단

특정업무경비는 직무수행경비의 일종으로서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이 사건 지침 제5장)'를 의미한다. 피고들이 비공개 심리를 위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는 비위첩보수집·감찰정보수집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감찰수사관에게 지급된 돈, 범죄수사지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및 수사 등 공적업무 수행 관련 식대, 각종 행사 비용으로 지출된 카드대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위 비용을 지급받은 감찰수사관 등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고, 특히 식대 등으로 사용된 카드대금은 사용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지출내역만으로는 관련된 수사 내용이나 수사 기밀 등을 유추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라) 피고 검찰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에 관한 판단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인 사업추진비와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인 관서업무추진비로 구성된다(이 사건 지침 제4장). 피고 검찰총장이 비공개 심리를 위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카드사용내역과 영수증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수사업무가 아닌 간담회 등 검찰청 공식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2)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피고 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에 관한 판단)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중앙지검장이 비공개 심리를 위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에는 각 간담회 참석자 명단, 각 카드사용 내역에 관한 카드번호와 승인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① 간담회 참석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나 직원이 아닌 제3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점, ②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업무추진비·회의비 등의 사용내역과 그 지출일, 금액 등이 모두 공개된다면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당한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보 중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없다.

3)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피고 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에 관한 판단)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중앙지검장이 비공개 심리를 위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에는 간담회 개최 후 오찬 또는 만찬 장소와 해당 음식점에서 결제한 영수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직원들이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

이 사건 각 거부처분 중 피고 검찰총장의 정보공개거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 중앙지검장의 정보공개거부 부분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검찰총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중앙지검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이정민



판사

임윤한

임윤한



판사

이소진

이소진



[별지 1]

공개 청구 정보

1. 2017. 1. 1.부터 2019. 9. 30.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집행건별로,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
2. 위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별지 2]

공개 대상 정보

1. 2017. 1. 1.부터 2019. 9. 30.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집행건별로,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
2. 위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3. 위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중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별지 3]

관 계 법령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국고금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

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 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 · 학교운영비 ·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 특수활동비 · 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 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제31조 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31조 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 섬 · 외딴곳 · 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05조 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 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수활동비 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특수활동비 중 수사·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3. 특수활동비(230목)

3-1. 적용범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 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을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